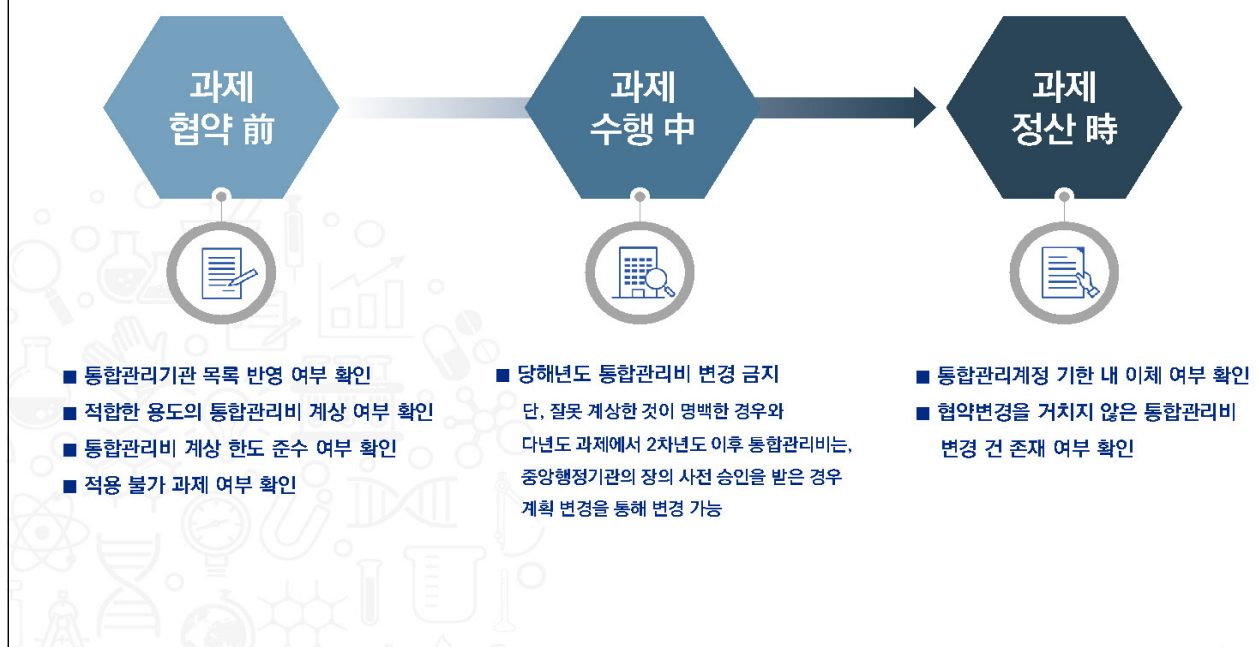


R&D 수행 단계별 주요 주의사항 및 주요 규정 위반 사례



1. R&D 수행 단계별 주요 주의사항 개요



2. R&D 수행 단계별 주요 주의사항 – 과제 협약 前



지정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 연구기관** (‘23년 상반기 기준 71개 기관)



ZEUS 공지사항 또는 **과기부 공문**으로 부처 및 전문기관에 **통보** 중이나, **미반영**되는 경우 존재

적합한
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5조』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아래 **3가지 용도로만 지출 가능**하므로,

이 외 용도의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장비 신규 구축비, 연구장비 업그레이드비 등)는

반드시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여야 함

유지·보수비

임차·사용비

이전·설치비

계상
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비 중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33

2. R&D 수행 단계별 주요 주의사항 – 과제 협약 前



적용
불가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 제1항』 하단 단서에 따라,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전문기관 별로 **적용 불가 과제를 확정**하고 **협약 시 적용**해야 함

1 적용 불가 과제 확정

전문기관별 소관 과제 중에서,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원되는 과제’**
선별 및 리스트 관리 필요

2 적용 불가 과제 여부 확인

과제 계획서 작성 시
↓
통합관리제 적용 불가 과제 여부 확인
↓
과제 협약 시
↓
통합관리비 미계상 여부 확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34

3. R&D 수행 단계별 주요 질의사항 – 과제 협약 前

[OO대학교병원 문의] 저희 OO대학교병원은 OO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로 R&D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시스템도 통합관리제 관련 기능이 없는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제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당초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때, 해당기관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후, 소속 세부기관 모두 통합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OO대학교병원과 같이 사실상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기관 리스트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정리하여 과기부에서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발송 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대학교 문의] 과제 협약 시 신규 구축할 연구장비비를 일반이 아닌 특례로 잘못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일반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연구시설·장비비(신규 구축비, 업그레이드비, 과제기간 내 최초 임차하는 연구장비비 등)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잘못 계상한 경우, 잘못 계상한 것이 과제계획서에서 명백하게 확인 가능하다면 협약 변경(전문기관 승인 필수)을 거쳐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35

3. R&D 수행 단계별 주요 질의사항 – 과제 협약 前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⁶⁾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자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특례 ⁴⁾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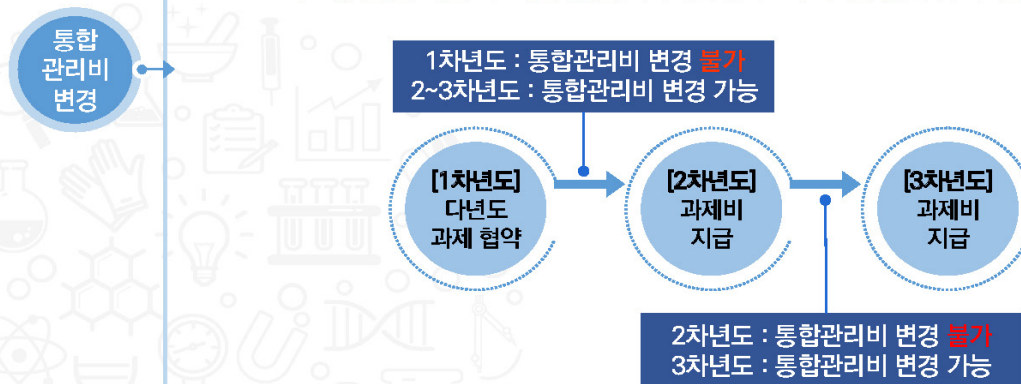
36

4. R&D 수행 단계별 주요 주의사항 – 과제 수행 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체결 이후 변경 불가**

BUT! 잘못 계상한 것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와
다년도 과제의 2차년도 이후 통합관리비로서 해당연도 과제비 지급 전인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계획 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37

5. R&D 수행 단계별 주요 질의사항 – 과제 수행 中



[OO연구기관 문의] 과제 수행을 하다 보니 1차년도 과제비가 남아서 1차년도 과제 종료 전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하여 추가 적립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또는, 1차년도 과제비가 부족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감액하여 타 비목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과제 협약 이후에는 해당연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해서는 변경(감액 또는 증액, 신규 계상, 삭제 등)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잘못 계상한 것이 명백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와 2차년도 이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서 해당연도 연구개발과제비의 지급 받기 전인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계획 변경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OO대학교 문의] 과제기간이 3년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2차년도 과제비를 지급 받기 전입니다. 2차년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 꼭 협약 변경을 거쳐야 하나요? 연차 실적 및 계획 보고서 제출 시 변경된 금액으로 제출하여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안 되나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할 때 전문기관 협약 변경을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으로 연차 실적 및 계획 보고서 제출 절차가 기본적으로 생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연차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라면 별도의 협약 변경을 거칠 필요 없이 연차 실적 및 계획 보고서에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38

6. R&D 수행 단계별 주요 주의사항 – 과제 정산 시



이체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2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기관 내 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



따라서, 부처/전문기관이 **정산 시**, 과제 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한도 내 계상** 및
기한 내 이체 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통합관리기관은 **결과 보고 시, 확인 필수**

미승인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협약 체결 이후 변경 불가**하며,
다년도 과제에 한해, **2차년도 이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과제비 지급 전, 전문기관과의 협약 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



부처/전문기관 정산 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확인** 가능하므로,
통합관리기관은 **결과 보고 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변경 건 존재 여부 최종 확인 필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39

7. R&D 수행 단계별 주요 질의사항 – 과제 정산 시



[OO대학교 문의] 과제 기간 종료 후 미적립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있다는 사실 또는 협약 변경을
거치지 않고 당해년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과제기간 중 발생한 이슈사항은 1차적으로는 연구개발과제비를 지원한 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슈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에
게 문의하여 주시고, 부처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NFEC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OO연구기관 문의]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기한(과제비 지급 받은 후 90일 이내)
초과 또는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협약 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시
지적하지 않고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회수할 수도 있고 회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제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제를 지원한 부처 및 전문기관의 소관이므로 부처 및
전문기관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과기부 및 NFEC에서는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제·개정하고 부처 및
전문기관에게 제도 관련 주요내용을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40

8.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관련 주요 규정 위반 사례



01

사용용도(유지 보수, 임차계약 연장, 이전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장비 신규 구축, 업그레이드, 신규 임차)의 비용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잘못 계상한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 관련)

0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한도인 수정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2항 위반)

03

당해연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차년도 이후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 제2항 위반)

04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기한을 초과하여 적립하거나 적립 자체를 누락하는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4조 제1항 위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41

8.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 관련 주요 규정 위반 사례



0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미지정기관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하여 협약한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 제1항 위반)

02

협약 시에는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한 후, 전문기관 연구비관리 시스템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오작성하여 등록한 사례

03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와 상이하게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금액을 작성·등록하는 사례

04

정산 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이체 또는 계정대체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단, 전문기관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42

9.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및 관리 관련 주요 규정 위반 사례



01

사용용도(유지 보수, 임차계약 연장, 이전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장비 신규 구축, 성능향상, 신규임차, 재료비성 지출)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잘못 사용한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5조 제1항 위반)

02

사용 대상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잘못 사용한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5조 제1항 위반)

03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존 연구개발과제비 계정으로 회수하였거나 기관 내 타 계정으로 임의로 이체한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6조 제2항 제2호 위반)

04

통합관리기관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관리하지 않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2조 및 제109조 위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 내용

43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활용팀

전화번호 : 042-865-3940

E-mail : pooling@nfec.go.kr